



금융위원회

# 보도자료

보도

2020.10.28.(수) 조간

배포

2020.10.27.(화)



책임자

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
윤상기(02-2100-2630)

담당자

김영근 사무관  
(02-2100-2642)

## 제 목 : 「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」 입법예고 [10.28.~12.6.]

■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(’20.3.24일 제정)은 ’21.3.25일 시행

\* ‘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’, ‘금융상품자문업자’ 관련 규정은 ’21.9.25일 시행

### < 요약 >

구분	법률	시행령(안)
적용대상	▶ 은행, 보험사, 금투업자, 여신전문회사, 저축은행을 열거 → 추가 적용대상 위임	▶ 신협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P2P), 대형 대부업자 추가
진입규제	▶ 개별법상 인허가·등록된 자는 금소법상 등록된 자로 간주, 그 밖의 자는 금소법상 등록의무화 → 등록요건 위임	▶ 대출모집인·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마련 * 온라인 업자는 소비자와의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알고리즘 탑재 의무화
내부통제	▶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부과 →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 위임	▶ 기준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, 평가·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 규정
영업규제	▶ 개별법상 산재되어 있던 6대 판매규제* 등 영업규제를 통합 → 추가 규율사항 위임 * 적합성·적정성 확인, 설명의무 준수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 행위 및 허위·과장광고 금지	▶ 추가 규율사항을 상세 규정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 * 예: 판매 시 상품숙지의무 부과, 행정지도로 운영해오던 대출모집인 규제의 법규화 등
소비자권리	▶ 청약철회권·위법계약해지권 신설 → 적용대상 등 위임	▶ 금융상품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에는 모두 적용
분쟁조정	▶ 現 금융위설치법 규정 이관 → 분쟁조정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위임	▶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을 대폭 개선
감독제재	▶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→ 부과기준 위임	▶ 과징금 상한(수입등의 50%)의 기준인 “수입등”을 투자성 상품은 ‘투자액’, 대출성 상품은 ‘대출액’으로 규정

## 1. 적용대상: 최대한 확대하여 동일기능-동일규제 구현

- (法)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법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 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전환됩니다.
- 법 적용대상은 “금융상품”의 ①직접판매업자, ②판매대리·중개업자, ③자문업자로 규정합니다.( § 2)
  - \* ① (직접판매업자)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자 (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포함)
  - ② (판매대리·중개업자)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·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
  - ③ (자문업자)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·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※ 法에서 “판매업자”는 ①+②로 정의
- “금융상품”이 4개 유형(①예금성 ②대출성 ③보장성 ④투자성)으로 구분되므로 금소법상 업자는 총 12개(4×3) 유형으로 구분 가능
- “금융상품”으로는 法에서 은행 예금·대출, 보험, 금융투자상품, 신용카드 등을 열거하고, 슈에 추가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.
- (令)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하였습니다.( § 2)
  - 구체적으로 신탁,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(소위 P2P업자), 대부업자(금융위 등록 금전대부업자에 한정)가 취급하는 상품 등을 열거했습니다.
  - 한편, 신탁 외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우체국은 감독체계\*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슈에 열거하지 않고,
    - \* [현행 상호금융기관 신용사업 건전성 감독체계] 금융위가 감독은 수행하지만, (새마을금고의 경우 중앙회장이 수행) 그에 따른 기관 조치 권한은 없음
- 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## 2. 진입규제: 대출모집인·독립자문업자 등록요건 신설

- (法)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.( § 12①)
  - 다만, 개별 금융업법에 따라 <sup>1)</sup>인·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<sup>2)</sup>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法상 등록을 요하지 않습니다.
  - 法 제정으로 영업근거가 마련된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는 法에 따라 등록을 해야하며, 등록요건은 슈에 위임되었습니다.

< 法상 신설되는 업자 등록단위 >

상 품	직 판업자	대리·중개업자	자문업자
투자성	금	투자권유대행인	비독립 투자자문업자
			독립 투자자문업자
보장성	웅	보험모집인	보장성상품 독립자문업자
		신협공제사업모집인	
대출성	회	신용카드모집인	대출성상품 독립자문업자
		대출모집인/리스·할부 중개인	
예금성	사	신설여부 추후 판단	예금성상품 독립자문업자

\* 기타: 개별업법상 인허가·등록요건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

- (令)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을 마련했습니다.
  - (대출모집인) ‘온라인’ 업자\*는 ‘오프라인’ 업자와 달리 “1社 전속 규제”를 받지 않는 점(☞ 관련내용 p.7)을 감안하여 등록요건을 추가(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, 영업보증금 예치)했습니다.( § 5)

\*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

<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>

오프라인·온라인 공동 요건	온라인 단독 요건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전문인력·물적설비 갖출 것</li> <li>▶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</li> <li>▶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영업보증금(5천만원, 영업규모에 따라 증액가능) 예치</li> <li>▶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</li> </ul>

- (독립자문업자) 자본시장법상 (비독립)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등록요건\*을 설계했습니다.( § 6)

\* 온라인 자문업자에 대해서도 소비자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 필요

**< 자문업자 등록요건 비교 >**

	자본시장법 시행령	금소법 시행령
자격요건	주식회사 또는 특수은행	법인
자기자본	2.5억원(모든 투자상품)	투자성 상품(좌동) / 그 밖의 상품(1억원)
	1억원(집합투자증권 등 일부 상품)	
인력요건	금융투자협회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	상품별 금융위 지정기관 인증 전문인력 1인 이상
임원 결격사유	지배구조법상 요건에 적합	좌 동
이해상충방지	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	좌 동
대주주 요건	법령상 사회적 신용 갖출 것	좌 동
물적설비		전산설비, 고정사업장 등
독립성		판매업 겸영금지, 알고리즘 등

### 3. 내부통제: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구체적 내용

- (法)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 및 기준 마련 시 준수해야할 사항이 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.( § 16②)

**< 내부통제기준 제도 비교 >**

구 분	지배구조법 시행령	금소법 시행령
적용대상	금융회사(직접판매업자)	직접판매업자, 대리·중개업자, 자문업자
규율범위	임직원	임직원 및 대리·중개업자
규율사항	위험관리 등 경영 전반	금융상품 판매·자문 관련

- (승)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, 그 기준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( § 10)
  -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의 예외: 1社에 전속된 대리·중개업자,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영세법인 등
  - 기준 마련 후 민원,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기준상의 미흡한 부분을 알게 되면 스스로 내부통제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.
  -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할 사항에는 현행 “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” (행정지도)의 주요 내용을 이관했습니다.

**< “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”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내용 >**

-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조직(협의회(長: CEO)·총괄책임자·총괄부서)의 설치
- 금융상품 판매 前 소비자영향평가 실시, 판매 後 수시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
- 판매담당자 평가·보상체계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등

## 4. 영업규제: 6大 판매규제 등 영업규제의 세부사항

- (法) 개별 금융업법에 산재되어 있던 ‘6大 판매규제’, ‘대리·중개업자 등의 영업 시 준수사항’ 등이 이관되고, 추가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은 슈에 위임했습니다.( § 17~22)

### < 6大 판매규제 주요내용 (☞참고3) >

①적합성 원칙(§17)	고객정보를 파악하고,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
②적정성 원칙(§18)	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
③설명 의무(§19)	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을 설명
④불공정영업금지(§20)	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
⑤부당권유금지(§21)	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
⑥광고 규제(§22)	광고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

- (令) 기존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개별 금융업법의 소비자보호 관련 하위규정을 가급적 그대로 이관하되,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
### [ 6大 판매규제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 ]

- ① (적합성·적정성 원칙, § 11·12) 상품판매 시 투자자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‘평가기준’ 을 신설하고, 그 기준에 따라 ‘평가보고서’ 를 작성해야할 의무를 규정했습니다.
- ② (설명 의무, § 13)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.
  - 판매업자는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.
    - 펀드 등을 제조업자(예: 자산운용사)가 아닌 직판업자(예: 은행, 증권사 등)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설명서를 직판업자가 작성해야 하며,
    - 판매업자의 “상품숙지의무” (know your product)가 도입되어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  - 금융상품(예금성 상품 제외)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설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
- ③ (불공정영업금지, § 15) 法상 ‘중도상환수수료 부과·연대보증 요구’ 금지 원칙 관련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,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관행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했습니다.
- (중도상환수수료) 수수료 부과금지의 예외로 法상 사유\* 外에 리스·할부금융(재화가 소비자에 인도된 경우) 등을 규정했습니다.
    - \* 대출계약 성립일 후 3년 이내, 법령상 부과가 허용된 경우
    - 한편, 은행 등이 자사로부터 대출받은 소비자가 대출금을 신규 계약으로 갚게 한 후에 그 계약이 3년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  - (연대보증) 全 금융권의 ‘개인’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되며,
    - ‘법인’ 연대보증은 대표자,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  - (추가유형) 판매업자가 자체점검, 금감원 검사 등에서 ①법 위반사실 또는 ②소비자 재산의 현저한 손실 위험 등을 인지 시, 소비자에 지체없이 알릴 것을 의무화했습니다.
- ④ (부당권유금지, § 16) ①적합성·적정성 원칙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조작하도록 유도하는 행위, ②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을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- ⑤ (광고규제, § 17) 대리·중개업자의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.
- (광고자격) 대리·중개업자의 ① ‘금융상품’ 광고는 원칙 금지하되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, ② ‘업무(사업 분야 등) 광고’ 는 원칙 허용됩니다.(투자권유대행인은 모든 광고 금지)
  - (금지행위) 최근 네이버 통장 광고\* 등과 같이 광고에서 대리·중개업자 또는 연계·제휴서비스업자 등을 부각시켜 소비자가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끔 만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.
    - \* 네이버는 미래에셋의 종합자산관리계좌(CMA) 상품의 가입채널·제휴서비스 제공자에 불과함에도 “네이버가 선보이는 상품”이라는 내용으로 광고
  - (광고심의) 금융업권 협회의 광고 심의대상에 대리·중개업자 광고가 포함됩니다.(협회 심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로 규정)

## [ 대리중개업자 영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내용( § 21 ) ]

① (이해상충행위 방지) “대출모집인 모범규준” (행정지도)을 통해 규율해왔던 1社 전속의무\* 관련 내용을 구분했습니다.

\* 대출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행위 방지 등을 위해 도입

○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·중개업자\* 중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社 전속의무가 적용되고, (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직접판매업자가 대리·중개하는 경우는 제외)

\* 대출모집인 모범규준(1社 전속 원칙)을 적용받지 않던 리스·할부금융 대리인, 대부중개업자에 대해서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기간을 부여

○ 온라인 사업자는 최근 규제 샌드박스 운영결과, 온라인 채널의 특수성\* 등을 고려하여 1社 전속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

\* 다양한 업체의 정보를 찾아 비교하는데 드는 비용이 현저히 낮고, 자동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부당 권유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낮음

② (대리·중개업자의 독점행위 방지) ①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로 인해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“수수료” 를 정의\*하고,

\*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대리·중개 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과도하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가

○ ②대리·중개업자가 직판업자에 자신이나 특정업자에만 위탁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.

③ (시장질서 유지) 法상 대리·중개업자의 재위탁 금지 규제의 예외\*에 대한 허용범위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.

\* 법률에서 대리중개업자의 재위탁을 금지하면서 그 예외를 승에 위임

○ 보험대리점의 경우, 기존과 같이 동일 보험회사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보험대리점 간의 재위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, 재위탁 시 보험회사로부터 승인받을 것을 의무화\*하였습니다.

\* 이를 통해 대리·중개업자에 대한 보험상품 직접판매업자의 책임 강화

## 5. 새로운 소비자 권리: 청약철회권 및 위법계약해지권

- (法) 청약철회권(예금성 상품에는 미도입)과 위법계약해지권이 도입되었고, 그 적용대상 등을 숙에 위임하고 있습니다.

< 청약철회권·위법계약해지권 주요 내용 >

	청약철회권	위법계약해지권
효력 발생요건	별도 요건 불필요 (판매행위의 위법성 불요)	금소법 위반사실 제시 & 판매자에 해지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
행시기한	(대출성) 14일 이내 (보장성) 15일 이내 (투자성) 7일 이내	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숙으로 정하는 기간
법적효과	판매자는 소비자에 원본 반환	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, 수수료 등 부과 불가

- (숙) 금융상품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外에는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최대한 넓게 규정했습니다.

- (청약철회, §37) 대출성·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하며,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, 고난도 펀드\*, 고난도 금전신탁계약, 고난도 투자일임계약'에 적용됩니다.

\* 집합투자업자가 기간을 정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자산운용을 실시하는 상품에 한정

- 예외: ①계약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하여 원본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(예: 리스, 증권 매매 등)  
②투자자가 청약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

- (위법계약해지, §38)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되,

- 계속적 계약이 아니거나\*, 중도상환수수료, 위약금 등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\* 위법계약해지권은 해당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사 불가

※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금융상품 유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5년,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.

## 6. 분쟁조정: 조정위 구성·운영 및 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

- (法) 금융위설치법上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관되고, 조정절차 및 조정위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승에 위임하였습니다.

### < 분쟁조정 제도 개요 >

- 분쟁조정은 ①우선 금감원장이 합의권고(30일 이내)를 하고, ②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
  - \* 예외적으로 합의권고를 생략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도 가능
- 분쟁조정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완료되어야 하며,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20일 이내 수락한 경우 “재판상 화해”의 효력이 발생

- (승) 분쟁조정 of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습니다.

### ① (조정위원회 구성, § 30)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법률전문가, 전문의(專門醫) 등 위촉가능 전문가의 자격으로 경력요건(15년 이상)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.
-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습니다.

### ② (조정위원회 운영, § 32-33) 분쟁조정안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겠습니다.

- 소비자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금감원장의 합의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\*를 규정으로 명시했습니다.

\* 조정가액, 이해관계자 규모, 선례유무 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

- 조정위원회 위원(35명) 중 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(6~10명)을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,

- 소비자 단체·금융업권 단체 추천 위원이 동수(同數)로 지명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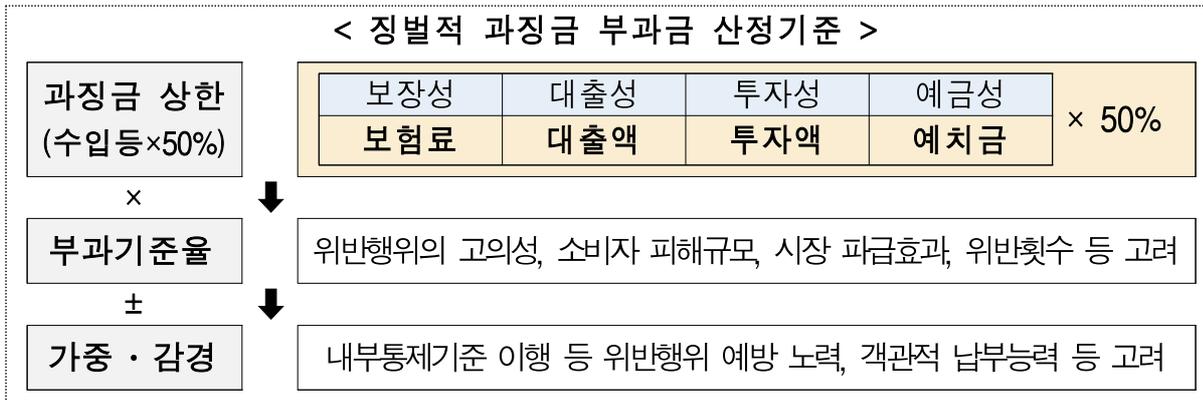
- 분쟁 당사자가 자유롭게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조정위원회 회의 일시·장소를 사전에 고지하게 됩니다.(조정위원회 출석 허가제\* 폐지)

\* 현재는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조정위원회 출석·의견진술이 가능

## 7. 감독·제재: 징벌적 과징금 및 판매제한명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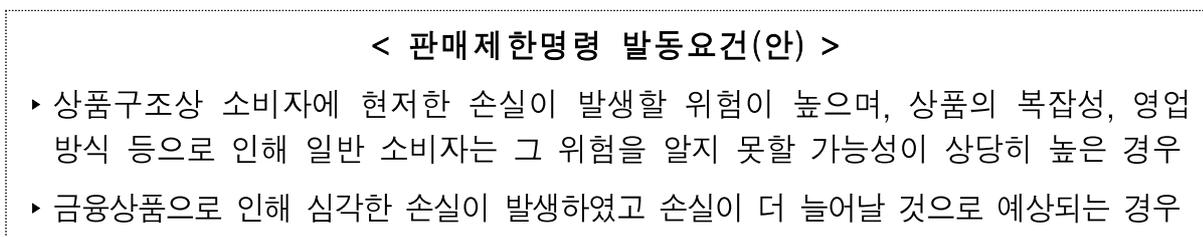
### [ 징벌적 과징금, § 44 ]

- (法) 과징금 부과한도를 위반행위로 얻은 “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” (“수입등”)의 50% 이내로 하고, “수입등”의 정의를 습에 위임하고 있습니다.
  - (令) 위반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부과를 위해 “수입등”을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정의했습니다.
    -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,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하여 거래규모가 클수록 제재강도가 높아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.
- \* 징벌적 과징금 제도의 탄력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고시에 규정



### [ 판매제한명령, § 41 ]

- (法) 소비자의 ‘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’에 금융위는 금융상품 판매 제한·금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, 그 발동요건은 습에 위임하고 있습니다.
- (令)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발동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. (구체적 사항은 금융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)



## < 향후 일정 등 안내사항 >

▶ 입법예고는 10.28일~12.6일까지 40일간 이루어지며, 그 기간 동안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·전화번호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 ☞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- 전자우편 : kant@korea.kr
- 팩스 : 02-2100-2999

※ 시행령 제정안 전문(全文)은 “금융위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) > 정보마당 > 법령정보 > 입법예고”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- ▶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보아가며, 필요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(FAQ)는 별도로 정리하여 게재할 계획입니다.
- ▶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은 12월중 예고할 계획입니다.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

▣ 법률은 총 8개 장(章)과 69개 조(條)로 구성

1장. 총칙(§1~§6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상품 · 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(§2)</li> <li>▶ 금융상품의 유형(§3) 및 금융회사 등의 업종(§4) 구분</li> </ul>
2장. 기본 권리·책무(§7~§10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소비자의 기본권, 금융소비자 · 국가 ·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책무</li> </ul>
3장. 등록요건(§11·12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법상 등록되지 않은 자의 금융상품 판매 · 자문 금지(§11)</li> <li>▶ 상품별 · 업종별 등록요건 (§12, <a href="#">대출·리스·할부금융 중개인 등록요건 법제화</a>)</li> </ul>
4장. 영업행위 준수사항(§13~§28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a href="#">내부통제기준</a> 마련 의무 부과(§15)</li> <li>▶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(§17~§23)</li> <li>▶ 업종별 준수사항(§24~§28, <a href="#">대리중개업자·자문업자 영업준칙</a> 등)</li> </ul>
5장. 금융소비자 보호(§29~§47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금융교육(§30·31) · 금융상품 비교공시 · 소비자보호실태평가</li> <li>▶ 분쟁조정 제도(§33~§43, 법원 소송중지 · 조정이탈금지 제도 등)</li> <li>▶ 손해배상책임(§44·45) · <a href="#">청약철회권</a>(§46) · <a href="#">위법계약해지권</a>(§47)</li> </ul>
6장. 감독 및 처분(§48~§64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a href="#">판매제한명령제</a> 운영에 관한 사항(§49)</li> <li>▶ <a href="#">징벌적 과징금</a>(§57~§64) 부과 기준 및 절차</li> </ul>
7장. 보칙(§65·66) / 8장. 벌칙(§67~§69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, 과태료, 양벌규정 등</li> </ul>

## 참고 2

## 금소법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

제 도		제 정 전	제 정 후
사전 규제	<b>6大 판매규제*</b> * 적합성·적정성 확인 및 설명의무 준수, 불공정영업행위·부당권유행위 및 허위·과장광고 금지	일부 금융업법	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
	<b>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</b>	법령상 규율 없음	기준 마련 의무 부과
사후 제재	금전적 제재	과태료 최대 5천만원	<b>징벌적 과징금</b>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
	형벌	3년 이하 징역, 1억원 이하 벌금	5년 이하 징역, 2억원 이하 벌금
신설된 권리	<b>청약철회권</b> (청약철회 시,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)	투자자문업, 보험	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
	<b>위법계약해지권</b> (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)	없음	
사후 구제	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<b>분쟁조정 이탈 금지</b>	없음	허용
	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<b>법원의 소송중지</b> 가능		
	분쟁·소송 시 소비자의 <b>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</b>		
	<b>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</b>		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·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
	<b>판매제한명령권</b>		재산상 현저한 피해 우려가 명백한 경우 발동
인프라	금융상품 비교공시·소비자 보호실태평가 실시근거	행정지도	법령
	<b>금융교육</b>	관련 규정 없음	금융교육 재정지원 및 추진체계 설치근거 마련

판매규제	제도 내용	주요 위규 사례
적합성 원칙 (판매자 권유 有)	고객정보 파악 및 부적합 상품 권유 금지	▶ 고객으로부터 ‘부적합 상품을 권유해도 괜찮다’는 동의를 받고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
적정성 원칙 (판매자 권유 無)	고객정보 파악 및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	▶ 고객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화된 투자자성향 점수표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행위
설명 의무	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	▶ 고객의 이해도와는 관계없이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요구하는 행위 ▶ 실제 설명과 다른 내용의 설명서를 교부하는 행위
불공정영업 행위 금지	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요구(중도상환수수료 부과, 개인 연대보증 요구 등) 금지	▶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의 일방적 중단 ▶ 금리인하요구권, 청약철회권, 위법 계약해지권 등 소비자권리 행사 방해
부당권유 금지	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	▶ 부적합 상품 판매를 위해 고객에 정보조작 유도 ▶ 고객 사전동의없이 수시로 대출을 권유하는 행위
광고규제	광고 내용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	▶ 펀드 광고에 객관적 근거자료없이 기대수익률을 제시하는 행위 ▶ 실제 판매자가 아닌 광고가 게재된 포털을 판매자로 오인하게끔 하는 행위